

현행	개정안
1. 직무로 인한 사망이나 직무상 상해, 질병으로 인한 사망의 경우 시·도의원 당해년도 <u>일비의 2년분</u> 에 상당한 금액	1. <u>회의수당의</u>
2.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의 경우는 시·도의원 당해년도 <u>일비의 1년분</u> 에 상당한 금액	2. <u>회의수당의</u>
3. (생략)	3. (현행과 같음)
② (생략)	② (현행과 같음)
<u>신설</u>	③ 제2항의 경우 제1항의 제2호 또는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을 지급받은 의원이 제1항의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되게 된 때에는 제1항의 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을 지급하되, 그 금액은 제1항의 제2호 또는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이미 지급한 금액을 감하고 지급한다.

부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종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

1. 심사경과

- 가. 제안일자 : 1995. 8. 2
- 나. 제안자 : 부천시장
- 다. 회부일자 : 1995. 8. 3
- 라. 상정일자 : 1995. 8. 12

2. 제안설명요지

가. 제안이유

- 지방자치법시행령중 개정령부칙 제3항(일반직 국가공무원으로 보하는 부시장, 부군수, 부구청장 직급에 관한 규정)에 의거 민선시장 이전의 부시장 직급이 3급(지방부이사관)에서 민선시장 선거이후 2급(이사관)으로 상향 조정되어 국가직으로 전환됨에 따라서 조례개정

나. 주요골자

○ 부시장 직급 상향조정

- 현행 3급(지방부이사관) → 2급(이사관)으로 조정

○ 동조례안 제2조(정원의 총수) 제1항 시본청 407명을

→ 부시장 직급이 국가직 2급인 이사관으로 상향조정되어 별도관리됨에 따라서 1명 줄게
되어 406명으로 조례개정

3. 질의 및 답변요지

질 의 내 용	답 변 내 용
○ 부시장 직급이 상향조정된 겁니까?	○ 그렇습니다.
○ 부시장 직급만 상향조정되고 타직급은 변화없습니까?	○ 없습니다.

4. 토론요지

가. 찬성토론

- 없 음

나. 반대토론

- 없 음

5. 심사결과

- 원안의결

6. 소수의견요지

- 없 음

7. 기타 필요한 사항

- 부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에 대한 관계공무원의 안내설명이 있었음

8. 체계적 심사내용

- 없 음

부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

의안번호	7
의결 년월일	95. 8. 12 (제40회)

제출년월일 : 1995. 8. 3

제출자 : 부천시장

□ 제안이유

○ 인구50만이상 시의 부시장 직급이 상향조정됨에 따라 조례개정

□ 주요골자

○ 부시장 직급 상향

- 현행 3급(지방부이사관) → 2급(이사관)으로 조정

□ 관계법령 발췌서 :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제21조

부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

부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중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1. 시본청 : 406명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5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.

신·구조문 대비표

현	행	개	정	안
제2조(정원의 총수) (생략)		제2조(정원의 총수) (현행과 같음)		
1. 시본청 : 407명		1. 시본청 : 406명		
2. ~ 6. (생략)		2. ~ 6. (현행과 같음)		